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1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. 10. 17. 임만균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22. 10. 21.

다. 상정 일자 :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

- 2022년 12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관계 규정 변동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함(안 제3조).
-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6조).
-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용어를 수정함(안 제8조제2항).
-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)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의회의 업무추진비 근거 규정 개정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기준으로 인용하는 근거 규정인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이 폐지되고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(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)」(이하 ‘지방회계관리훈령’)으로 통합·개정(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임.

<표-1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원칙) 업무추진비는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사용·집행해야 한다.	제3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----- ----- .

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항목 및 공개시점 규정(안 제3조)

- 현재 의회는 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고, 「지방회계관리훈령」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조례(규칙)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해 공개 시점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특정하는 것은,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<표-2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.	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, 집행목적, 집행장소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.

4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- 현행 조례 제9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장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,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제2항은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, 환수와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, 이는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<표-3>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생략)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<u>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</u>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점검하여</u> ----- <u>확인하고</u> , ----- ----- <u>취해야 한다.</u>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(생략)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취해야 한다.</u>

5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이 폐지되고 「지방회계관리훈령」(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, 2021. 1. 1. 시행)이 시행되면서,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함.
-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시점을 다음 달 10일 이내로 특정하고,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,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강제할 조치 등은 서울시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생략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임만균, 김성준, 남창진,
박영한, 박칠성, 이경숙,
이병도, 이소라, 이영실,
이용균, 전병주, 최기찬,
홍국표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관계 규정 변동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함(안 제3조).
- 나.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.
- 다.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용어를 수정함(안 제8조제2항).
- 라.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을 “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, 집행목적, 집행장소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모니터링 하여”를 “점검하여”로, “확인하고”를 “확인하고,”로, “취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취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원칙) 업무추진비는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 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<u>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</u>에 따라 사용·집행해야 한다.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 -- <u>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<u>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<u>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, 집행목적, 집행장소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생략) ② <u>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<u>모니터링</u>하여 이상 유무를 <u>확인</u>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</u></p>	<p>제8조(교육 및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점검</u>하여 ----- <u>확인</u>하고, ----- -----</p>

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

- ① (생략)
-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---- 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-- 하여야 한다.